

『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강승수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·취미활동과 각종 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개보수 대상을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을 쾌적하게 유지·관리하고 시설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경로당의 시설기준과 경로당 신축 등에 대한 지원대상, 지원조건, 지원기준 등을 명시함(안 제3조 ~ 제7조)
- 경로당 신축 등 사업선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함(안 제8조)
- 경로당 신축 등 사업추진 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경로당 리모델링 및 개보수에 따른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 ~ 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, 「공동주택관리법」, 「주택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- 검토부서 : 사회복지과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지역 내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개보수 시 지원대상과 기준 등을 명시하고 시 소유 이외의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경로당을 쾌적하게 유지·관리하고 시설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경로당의 경우 「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 제24조제4항제4호에 경로당 보수 지원에 관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중복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